
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 - 239호

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31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 공고

1. 수립배경

-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‘기본방침’에 따라, 시·군이 수립하는 ‘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(법 제7조)’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(성격)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농촌공간의 모습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전략계획
* (법적근거)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
- (지위) 정주여건 개선, 산업 육성, 공동체 육성 등 농촌 공간 측면에서 농촌 정책과 과제에 대한 최상위 계획
- (구성) 기본계획은 개요, 현황 및 전망, 비전 및 목표 설정, 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, 부분별 계획으로 구성되며, 시도지사의 승인 후 확정

- (개요) 계획의 목적, 공간적 범위, 계획의 성격 및 추진체계에 대해 기술
 - (현황 및 전망) 시·군의 잠재력, 지역자산, 강점과 문제점을 진단·분석, 장래 여건변화를 전망하여 농촌공간 재편 방향 제시
 - (기초조사) 시·군이 가진 잠재력과 장점, 문제점 등 시군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항목 조사와 실태를 분석
 - (재편방향 설정)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시·군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적합한 미래 농촌공간의 재편 방향을 제시
 - (비전 및 목표 설정) 문제의 원인, 지역여건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시·군이 지향하는 공간구조 재편 및 재생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,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
 - (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)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,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시
 - (부문별 계획) 전략과제별로 향후 10년간 추진할 방향과 과제 중심의 이행방안을 구체화, 이를 추진할 추진체계와 과제를 제시
- (계획확정) 주민공청회, 기초·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, 시·도 지사의 승인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, 지체없이 공보 등에 공고

3. 기타 참고사항

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」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(www.mafra.go.kr)을 통해 조회(알림소식 → 공지·공고)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(044-201-1559, 156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